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0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김형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서상열, 소영철,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최민규,
허 훈, 황유정, 황철규
의원(27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특정 장르인 '음악축제'로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축제를 포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장르 편중 없이 균형 있는 축제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과 서울특별시시장 명의의 상장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후원 및 상장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음악축제' 표현을 '축제'로 수정(안 제4조)
- 나. 축제 지원 가능 분야 범위에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명칭 및 서울특별시시장 명의 상장 추가 (안 제16조 제4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음악축제”를 각각 “축제”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음악축제”를 “대표축제”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에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상장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은 제외한다.

1. 단순 이벤트성 공연 행사
2. 정치목적의 행사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3. 과도한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행사
4. 행사와 관련하여 각종 부조리(후원 명칭 사칭)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5. 예술 경연 대회 상장 지원 등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경연 대회 운영 규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연 대회
6.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예술 경연 대회
7. 과거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서류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9. 단체 내 소송 등 민원이 진행 중인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축제의 개최)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히 장르별·계절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u>음악축</u> <u>제</u> 를 연중 개최하거나 민간에서 주최하는 <u>음악축제</u> 를 적극 육성 ·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축제의 개최) ----- ----- ----- ----- <u>축제</u> ----- ----- --- <u>축제</u> ----- -----.
제6조(축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축제위원회의 설치)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음악축제</u> 의 개발 및 개최에 관한 사항	5. <u>대표축제</u> ----- -----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에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특별시 명의의 상장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u>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은 제외한다.

1. 단순 이벤트성 공연 행사

2. 정치목적의 행사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3. 과도한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행사

4. 행사와 관련하여 각종 부조리(후원 명칭 사칭)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5. 예술 경연 대회 상장 지원 등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경연 대회 운영 규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연 대회

6.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예술 경연 대회

7. 과거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서류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9. 단체 내 소송 등 민원이 진행 중인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4조(축제의 개최)의 음악축제를 축제로 변경한 것으로 축제 지원분야 확대에 따른 비용발생의 여지가 있어 서울시 관련부서(문화본부 문화예술과)에 문의하였으나 기존에도 음악축제 외 축제에 지원하고 있는 것 (기추진 사업¹⁾)으로 확인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문화본부 2025년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 9,699,500천원

⇒ 음악축제 외의 축제(서예, 미술, 무용 등) 또한 기지원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음악축제에서 축제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